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81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17일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의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차장, 방음벽, 정수센터 침전지 상부 등의 공유재산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고 있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은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함(안 제4조)

○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 삭제함(안 제8조)

○ 이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호 중 “산하 공공건축물”을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으로 한다.

안 제8조 제목 중 “권장”을 “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 중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로 한다.

안 제10조 중 “사항”을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토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광 설비로서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①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 ② (제정안과 같음)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설비 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	제4조(적용대상) ---------- ---------- ----------. 1. ----------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 2.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되는 태양광 설비	
제5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제정안과 같음)
제6조(설치기준의 마련) ① 시장은 태양광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의 마련)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제7조(안전성 확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태양광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성 확보) (제정안과 같음)
제8조(설치기준 준수의 권장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도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시장의 건축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 중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제8조(설치기준 준수의 권고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있다.	
제9조(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시장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토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광 설비로서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①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제5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의 마련) ① 시장은 태양광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성 확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태양광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기준 준수의 권고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도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시장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시장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